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양승현 연구위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이번 국회에 속속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i)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책임 관련 내용, (ii) 분쟁조정제도의 전면적 구속력, (iii)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 관련 내용도 다시 발의됨.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개정·보완 요구가 예상되므로,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 특성에 따른 실효적 소비자보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5월 말 제21대 국회 개시 이후 금소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속속 발의되어 현재 5건의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 2009년경부터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위한 금융통합법률로 논의되어 온 금소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된 금융감독체계 등에 관해 엇갈리는 견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오랜 산고를 겪음
 -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정부안이 제출된 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 의무 삭제 등 각계 의견 및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무위원회 대안이 지난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격 국회를 통과함
- 법 시행 전임에도 독일 국채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라임펀드 등 최근 대규모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배경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
 - 이에 본고에서는 21대 국회에 현재까지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표 1〉 제21대 국회 금소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 7. 13.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금융소비자와 이익상충이 우려되는 업무의 겸영 금지(안 제12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보수 등 공개(안 제26조 제3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및 고의·중과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3배 범위) 도입(안 제44조) · 투자성 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안 제44조의2) ·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계획 수립 제출 명령권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피해보상계획 이행 의무 부여(안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윤창현 의원 (국민의 힘)	2020. 7. 31.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모집 관련 금융소비자 손해에 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안 제45조의2 신설)
박덕흠 의원 (국민의 힘)	2020. 8. 7.	· 고위험금융상품¹⁾ 관련 설명의무 강화 및 계약서류 서명 대행 등 금지(안 제19조의2, 제23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호의2 신설 등)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 8. 12.	·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편면적 구속력)(안 제42조의2 신설)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 9. 3.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추정(안 제45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 시 일정한 경우²⁾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3배 범위) 적용(안 제45조의3 신설) · 금소법 위반으로 다수인 손해 발생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안 제45조의4 신설) 및 집단소송 시 증거개시(자료제출) 제도 도입(안 제66조의2 신설)

주: 1) 고위험금융상품이란 투자성 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이나 이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상품 구성의 복잡성, 원금손실가능성의 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입 금액이 피해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함

■ 발의된 개정안 중 다수는 손해배상책임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집단소송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내용임

- (입증책임 전환) 금소법은 현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하고 있으나, 전재수 의원안은 이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로 확대함
 - 지난 국회에도 유사한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바,¹⁾ 입법 과정에서 고의·과실의 부재는 입증하기 극히 어려워 금융회사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음
- (손해배상액 추정) 전재수 의원안은 투자성 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시, 민병덕 의원안은 모든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²⁾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전재수 의원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법 위반 시, 민병덕 의원안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

1) 정부안도 현행법보다 넓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에도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음

2)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소비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함

- 20대 국회에서 의원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법체계상 문제와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 등 다른 제재 방안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음
- (분쟁조정외 편면적 구속력) 이용우 의원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나, 80% 이상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이 박탈³⁾되는 등 위헌 소지에 대한 비판이 크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바 없음
- (집단소송) 민병덕 의원안은 다수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함
 - 집단소송은 과거에도 의원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소송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으로 20대 국회 정부안 및 현 금소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 (GA의 손해배상책임) 윤창현 의원안은 GA에게 소속 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GA의 자기책임을 강화함

■ 그 밖에 소비자와 이익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의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 고위험금융상품의 설명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발의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겸영 금지) 현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융상품판매업 겸영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재수 의원안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겸영 금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예정⁴⁾함
-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개) 전재수 의원안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안내자료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부안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가 입법 단계에서 삭제되었으며, 원가공개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제으로써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는 논의가 있었음
-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 박덕흠 의원안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고위험인 점 등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 및 확인의무 등을 부여함

■ 현재 시행이 예정된 금소법은 수많은 쟁점에 관하여 오랜 시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나,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개정·보완 요구가 예상됨

-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실효적 소비자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면밀한 검토 및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kiri**

3) 2017년 정부안에 대한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였음

4) 금지되는 겸영 업무는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음